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단143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26 지분에 관하여
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들 사이에 2017. 3.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는 2015. 6. 22. D에게, 만기일은 대출일부터 60개월,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을 각 연 34.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3. 위 F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차전566으로 'D는 원고에게 8,401,605원 및 그 중 2,998,537원에 대하여 202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8. 19. 송달되어 2021. 9. 3. 확정되었다. 2021. 11. 19.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원금 2,988,537원과 이자 8,793,086원이 남아 있다.

다. D의 아버지 G는 2017. 3.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아내 H와 자녀 피고 B, I, D(개명전 J), K, 피고 C은 2017. 3.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망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의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7. 8. 23. 피고들 앞으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L, M, N에 대한 채무도 연체 중이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은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의 사해의사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법정상속지분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3 지분(D의 법정상속분 2/13의 1/2)에 관하여,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각 1/26 지분(망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1/2지분 중 D의 법정상속인 2/13의 1/2)에 관하여 2017. 3. 28.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원고는 2022.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일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8. 21.로 특정하고 있으나, 소장에서는 2017. 3. 28.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별지